##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9298

발의연월일: 2023. 1. 3.

발 의 자: 김철민·강선우·고영인

김민기 · 김영배 · 민형배

박 정·백혜련·안민석

윤준병 • 윤후덕 • 이병훈

이소영 • 이원욱 • 이정문

조승래 • 조오섭 • 한병도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의 위해(危害)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및 가 정폭력피해자 등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 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되 30일의 범위에서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긴급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 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심사·의 결을 완료하도록 하되,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5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4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 항) 단서 중 "제6항제1호"를 "제7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 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변경위원회는 그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
회) ① ~ ③ (생 략)	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위
	원회는 제7조의4제1항 각 호의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u>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u>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u>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4제2
	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
	경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주민등록지의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u>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
	간 안에 심사・의결을 완료하
	기 어려운 경우에 변경위원회
	는 그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u>④</u> ~ <u>⑦</u> (생 략)	<u>⑤</u> ~ <u>⑧</u> (현행 제4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⑧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	<u>⑨</u>
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 )	나	. 다	만,	제6항	제1호에
따근	4	임1	명된	공두	-원인	위원은
ユ	직	에	재직	하는	동안	재임한
다.						

⑨ ~ ⑪ (생 략)

① 변경위원회와 <u>제11항</u>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7항제1호</u>
$\underline{0}$ $\sim$ $\underline{0}$ (현행 제9항부터 제1
1항까지와 같음)
<u> </u>